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시민에게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 및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 다.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라. 사무의 위탁 사항 규정(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시민에게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 및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고려할 것
2.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노력을 촉진할 것
3.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향상시킬 것
4. 노사화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할 것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고용시장의 특성과 발전방향에 적합한 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관정책이 성별·연령별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창업, 청년고용, 해외취업, 고졸·대졸채용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2. 여성과 고령자, 장애인 등 제2조제3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3. 구인·구직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훈련,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일자리센터 운영, 해외취업을 위한 국제교류센터 운영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경상북도(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 11. 생략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 11. 생략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 국제요양간호사 독일파견
 - 파견인원 : 10명 (파견일 2017년 1월)
 - 사 업 비 : 143백만원 (시비 98, 대학 20, 학생 25)
(어학교육, 항공료, 어학비자, 유학생보험, 주거비, 운영비)
 - 독일지원 : 471백만원(이론교육, 실습비, 주거비, 생활비)

4. 작성자

- 노동복지과 희망일자리창출담당 장세철 (480-6241)

소관 실 · 과		노동복지과
입 안 자	과 장	남 동 수
	담 당	장 세 철
	담 당 자	박 세 정 (480-6242)